

외근경찰 '2인 1조' 근무원칙 훈련방식 연구

김 영 주* · 조 계 표**

〈요 약〉

경찰은 현장 출동 시 '2인 이상'의 현장 출동과 개인별 임무 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동원칙과 개인별 임무 분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출동 시 적절치 않은 1대 1식 대응 중심의 무도훈련과 호신 체포술, 위해성 장비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과잉대응과 소극적 대응, 각종 인권문제 등 경찰의 피습과 피소 등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경찰기관의 신뢰도 하락과 정당한 체포를 행한 경찰관의 책임 소재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대 1식의 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2인 이상'의 출동 원칙과 업무 분담 규정의 성격이 다른 교육훈련 체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대 1의 훈련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교육훈련 시스템 현황과 외국의 교육 훈련 사례를 고찰하여 '2인 이상' 출동 원칙에 따른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에 따른 훈련방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2인 1조 출동 원칙, 1대 1식 대응, 임무 분담, 인권문제, 경찰교육훈련

* 중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중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경찰의 현장 출동 배경 III. 국내·외 경찰의 교육훈련 현황 IV. 비교 및 훈련방식 개선 방안 V. 논의 및 결론

I. 서 론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동은 신속함과 함께 개인별 임무분담, 범인을 안전하게 체포하고 인권침해 없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잘못된 과잉대응으로 인해 SNS나 언론을 통해 전파되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강제적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적 침해는 필수불가결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 상해 또는 생명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체포자의 재산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도 일어난다.(이훈, 2015)

경찰청 현장 매뉴얼을 보면 경찰은 현장 출동함에 있어 2인 이상 출동과 개인별 구체적 임무 분담을 규정 하고 있다. 경찰의 현장 활동 중에 범인 체포 상황과 연행까지 모두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황에 맞지 않는 범인 체포 기술과 부적절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 체포에 대해 인권적 권고와 법적인 문제로 소극적인 체포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외면적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배철수(2014)는 소극적인 범인 체포 문제점은 실질적 기술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범인 체포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 호신·체포술 교육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치안 현장에서 직접 적용 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되어야 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주(2012)는 이런 문제로 국내 경찰기관의 범인 체포 교육훈련에 대한 시간, 장소, 교관의 능력 및 자질,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개선된 교육훈련 방법의 수립과 지도자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대응 시 '2인 이상' 인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서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II. 경찰의 현장 출동 배경

1. 외근경찰(外勤警察)

광의의 외근 경찰은 순수한 내근 경찰을 제외한 외근 활동 위주의 모든 경찰을 말하며 협의의 외근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과 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상 외근경찰이라 칭할 때는 협의의 외근경찰을 뜻한다.

외근경찰이란 경찰의 업무 구별에 대한 분야로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행동 거점으로 하는 담당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이 제반 사안에 대해 즉응하는 활동 체제에 의해 업무를 일반적 초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찰활동이다.¹⁾

2. '2인 1조' 현장 출동 원칙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 출동을 원칙으로 이루고 있으며 경찰관 1인은 권총, 파트너를 이루는 다른 경찰관 1인은 전자 충격기(테이저 건) 또는 가스분사기를 각각 분리 휴대하고 있다.²⁾

1) 외근경찰 [外勤警察]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2) 경찰청 "현장 매뉴얼", 2015.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경우 파트너가 아닌 다른 근무자와 일시적으로 2인 1조로 이루어져 출동하는 경우와 1인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시 위해성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서로 중복되어 경찰 물리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이훈, 201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든 위해성 장비를 착용하지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찰의 1인 출동과 휴대무기 공백으로 법집행이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2인 이상 출동과 위해성 장비에 대하여 실질적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경찰 현장 매뉴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의 방지·범죄의 예방 및 제지·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등의 조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현장 활동의 기준이나 물리력 사용의 한계와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기준 등을 현장 상황에 관한 대응의 순서, 수준, 방법을 단계별 구체적으로 문서화 한 것이다.

2011년 6월 총기 매뉴얼을 인권위 및 인권 단체 등에 보내 의견 표명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경찰 장비 매뉴얼이 공개되자 경찰 총기사용 자체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11월 18일, 경찰청이 제작 추진 중인 권총 및 경찰장구사용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개정을 거쳐 현장 상황과 인권조항에 맞추어 개정하고 있다.³⁾

이에 일선 경찰들의 현장 출동 시 위해성 장비 사용 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 장구의 사용을 위한 규정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경찰 현장 매뉴얼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경찰 현장 매뉴얼은 현장 상황에 대해 순조로운 활동과 업무의 체계적 습득, 일정

3) 네이버 지식백과, 권총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매뉴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

수준의 직무수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4.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과 피의자 인권의 충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이 휴대하는 무기는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경찰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해성 경찰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⁴⁾

위에서 열거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찰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예외로 범인의 체포 시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잉체포로 인한 피체포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로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따라서 체포 시 위해성 경찰 장비를 최소화하여 상황에 적절한 범인 체포와 연행을 수행함으로써 피체포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교육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현장에서 저항하는 피체포자에 대한 경찰의 휴대무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권총,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피체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그에 반면 이러한 훈련방식을 선택한 경찰관의 응답률은 1.0% 미만이다.”(이훈, 201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1대 1 방식의 무도훈련 방식과 위해성 장비 착용으로 인한 출동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로 2인 이상의 협력 방안 현장 출동과 임부 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4) 법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5) 한겨레, 2016. 05. 15 기사 “〈기사〉 외근 경찰에 권총, 테이저 건 모두 지급 검토.

Ⅲ. 국내·외 경찰의 교육훈련 현황

1. 국내 경찰의 교육훈련 현황

1) 중앙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는 신입 경찰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대상은 일반, 여경, 101경비단, 사이버, 외사, 기동경찰, 경찰행정학과 특별 채용자 등을 대상으로 34주간(8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경찰관 양성을 통한 현장 즉응 SMART 경찰 양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배상흠, 2015)

신입 교육 목표에 따라 경찰업무에 필요한 실무,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 능한 프로 경찰관 양성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 호신·체포술 교육 훈련이 20시간 정도인데다 실제로는 3-5가지의 경찰 호신·체포술을 배우고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표 Ⅲ-1〉 중앙경찰학교 무도과목 세부사항 및 수업시간

과목	수업시간			담당부서	비고		
	무도(40)	계	강의			참여	자기주도
기본 호신	40	2	37	1	학과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체포술(40)	필수 호신	8	2	6		학과	
	응용 호신	4		4		학과	
경찰장구 사용 능력	16	2	10	4	학과	수갑, 삼단봉, 총기	

출처: 경찰 인사 관리론 (2016)

2)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전문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4년제 교육기관이며 법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민주 경찰 육성과 지도적 인격 도야와 체계적인 학습이론 습득을 통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경찰 실무 능력 배양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배상흠, 2015)

경찰대학의 학년별 무도 교육 현황에 따른 교과과정은 법학, 행정학, 경찰학 등 경찰간부로서 필요한 전공과목 외에도 경제·정치·문화·사회 방면의 교양수업은 물론 무도를 포함한 기타 과목 등 총 174학점을 이수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중 1학년 때 결정한 무도를 4학년 까지 배우고, 3학년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현장관서 실습을 위한 현장 실무교육 및 심화무도교육(강화체포술 등)을 실시한다.(최준선, 2014)

〈표 III-2〉 경찰대학 무도 교과 편성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업요일	월	금	화	수	수.목	목
수업교시	5.6	1.2	7.8	5.6	7.8	5.6
교육시간	4기간(주2회)				2시간(주1회)	
교육시간	120시간				60시간	
현장실습	-	-	현장관서실습		-	
수업내용	경찰무도, 체력단련 및 기타 무도(체포술 외)를 혼합하여 교육					
비고	4년간 총 420시간 실시					

* 출처 : 경찰대학 2017.

3) 경찰서 등에서의 직장 교육훈련

각급 경찰서 및 지구대와 파출소의 직장 훈련은 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통제하며 직장교육과 체력단련 및 체력 검정으로 나누어져 실시하고 있다.

무도 훈련의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하고, 호신·체포술은 월

2회 실시하며 1회는 맞춤형 체포술, 1회는 서벌 자율적 체력 단련 헬스, 요가 등을 실시한다.⑥

경찰청은 상무관장 지도로 매월 호신 및 체포술 교육주간으로 1주일(월요일~금요일)을 선정하여 오전, 오후 총 10회 교육 하고 있다. 또한 무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이 매월 경찰관들의 무도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표 Ⅲ-3〉 직장훈련 평가 기준

배점		평가내용
사 격 훈 련	6점 -전반기 : 3점 -후반기 : 3점 -권총마스터 : 6 점 -경정 및 경감의 경우 제외	-연2회(전.후반기)사격훈련시 기록 사격만을 평가 (전반기속사+완사)/100 +(후반기속사+완사)/100
체 력 단 련	5점 -무도훈련 : 2.5점 × 무도훈련 참석 횟수/24 -체력검정 : 2.5점 체력검정 점수는 체력검정 평가 등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1등급 (2.5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불참자(0점)	-무도훈련(호신체포술 포함)은 소속기관장이 인정 한 훈련에 한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횟수는 최대 2회까지로 한다. -체력검정 자육 실시자중 불참자 및 검정 제외자는 최근 3년내(만55세 이상은 만55세이전 3년 내)실 제 검정 기록 중 최근 성적을 부여하되, 3년내 실 제 검정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체력 관리규칙-이 정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직 장 교 육	10 점~ 4점 -경정, 경감 10점×참석횟수/24 -경위이하4점×참석횟수/24	-직장교육은 소속 기관장이 인정한 훈련에 한한다. -월별 인정되는 참석 횟수는 기관별 소집교육 1회 를 포함하여 최대 2회 까지로 한다.

* 출처 : 사이버 경찰청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2017)

2. 외국 경찰의 교육훈련 현황

1) 미 국

미국은 경찰교육 훈련을 마친 후에도 1년 반 정도의 견습 기간을 둔다. 이 기간

6) 지방청 교육센터와 동일한 규정 적용

동안 1명의 Field Training Officer(FTO)가 신입경찰관과 동행해 실무업무 지도를 하면서 평가한다.

뉴욕시의 경우 경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뉴욕경찰 아카데미에서 22주 동안 신입 경찰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법률 분야 115.5시간, 사회과학 분야 129시간, 실무분야 161.5시간을 강의하고 있고, 실무분야의 팀워크 중심 교육훈련과 장비 사용법 포함되어 있다.

LA 시는 신입 경찰을 각 학교에서 8개월의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대부분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형법과 인간관계, 스페인어와 보고서 작성과 함께 팀워크 전술과 사격 및 운전 교육을 받는다. 교통에 관한 법 230시간, 운전 40시간, 총기사용 법 113시간, 인간관계 100시간, 법률 105시간, 체력 훈련 142시간으로 이때 경찰 호신·체포술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원활한 몸매와 체력을 위하여 긍정적 사고방식과 지구력 향상과 함께 물리적 체포술과 방어법 및 맨손방어술 등이 포함된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범인과의 접촉 상황을 똑같이 재 연출해 직접 의사소통까지 하고 레벨별로 간단히 제압하거나 무기를 사용해 강한 저항에 대비하는 팀워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배상흠, 2015.)

2) 영 국

영국의 경찰 신입순경 교육은 전국 12개의 지방 경찰훈련학교에서 각각 실시하는데, Initial Police Learning & Development Program:(IPLDP)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경찰 교육 개발프로그램은 신입경찰이 실제 거주하면서 근무지역에서의 공동체에 기인한 교육 방법이고 전국적 교육훈련의 단일적인 질적 레벨의 유지를 위해 인증된 교육 프로그램이다.(박현호, 2017)

경찰교육 프로그램은 4단계로 구성되어진다. 1단계는 약 3-5주에 걸쳐 기본 교육을 받고 체력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경찰서 파출소에 지정된다. 2단계는 약2-3주간 관련 법령을 익히게 되며 감독자에게 연락을 한다. 3단계는 각 청마다 학습을 통해 정책과 법령을 습득하며 파일 작성과 정리 방법을 배운다. 4단계는 독립 순찰근무를 수행하며 30일간 감독을 받는다.

1대 1 방식의 기술적 체계는 맨손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형태와 경찰장구로 제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3인의 경찰관이 협력하여 제압하는 형태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3) 프랑스

초임 경찰 교육훈련은 3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1단계는 소양 과목 중점으로 6주간 시행한다. 2단계는 10주간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참여 수업을 실행한다. 참여식 수업을 통해 현장상황과 비슷한 호신·체포술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3단계는 12주간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며, 교통, 미아, 재난, 전산 현장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훈련을 받는다.

교육훈련기간 중에 평가 3회와 실습교육 중 담당자 평가 1회 등 총 4회 실기평가를 실시한다.(김주한, 2014.)

4) 일본

새로 선발된 경찰 중에 경력이 없는 사람은 도도부현 경찰학교에서 10개월의 기초실무 교육과정인 법학, 수사, 직무윤리 등의 대한 신입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이 끝나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8개월간 직장실습과 수사실습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다시 경찰학교 초임 종합부서에서 3개월간 교육훈련을 받는다.

경찰교양은 채용과 승진 시에 교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데 직장에 있어서의 교양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다른 경찰 교양과 구분된다. 각 관구 경찰학교에서는 간부 승진자에 대해 그 계급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신현기, 2014)

IV. 비교 및 훈련방식 개선방안

국내 교육훈련의 경우 실제 규정과는 거리가 멀고 출동 현장이나 장비의 숙련화가 아닌 사용법 위주의 장비 교육과 협력 체포가 아닌 1대 1 공격 동작이 주가 되는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의 일반적인 무도를 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에 체포자의 개인적 경험 외에 의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의 체포술 교육은 경찰의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2인 이상의 출동 규정에 따른 분업 대응 방식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개인적 소양과 물리력을 조합한,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의 교육훈련은 “실질적 기술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체포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질적이면서 치안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배철수, 2014)

외국의 교육훈련은 현실적인 현장 소양과 팀워크 훈련을 중점으로 한 현장 대응의 협력화, 그에 따른 개인 능력 배양이라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충분한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ickner(1950), Patten, Jr(1970)의 연구는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하여 먼저, 교육은 기본적으로 경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훈련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표 IV-1>의 국내·외 경찰 훈련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 검토 연구 결과 국내 경찰들의 훈련 방식은 개인적인 1대 1식 무도 수련의 방식을 행하고 있었으며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해서는 장구 사용법과 안전교육, 안전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가상 모의훈련을 기반으로 2인 이상의 팀워크 훈련 방식의 강인한 체력훈련을 바탕으로 팀워크식 범인 체포술과 장비사용의 분업화로 장구 사용에 대한 숙련화를 목적으로 한 훈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1> 국내외 경찰 훈련 방식의 차이점

	비교	인원	방식	장소	방법
훈련 방식 차이점	국내	1대1	개인훈련	체육관	맨손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장구 사용법, 안전교육, 안전검사
	외국	2인이상	팀워크	가상 모의 훈련장	맨손 체력기반 공동 훈련 장구 분업화

이런 연구 결과를 비교해 훈련 방식을 개선한다면 실제 현장 상황에서의 안정감과 경찰관의 직무인 체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과잉대응 등에 대한 문제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경찰기관의 범인 체포 교육 훈련시간, 장소, 교관의 능력 및 자질, 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2인 이상의 출동 규정과 분업화에 따른 다음과 같은 개선된 교육 훈련 방법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 첫째, 2인 이상의 맨손 체포 기술과 위해성 장비 사용법 훈련.
- 둘째, 2인 이상의 팀워크 전술 훈련.
- 셋째,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반복 훈련.
- 넷째, 현장에 대한 모의 연습이 이루어지는 훈련.

위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결여된다면 현장에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며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대내외적 신뢰 저하와 해당 경찰관에게 다가오는 유·무형적 피해 등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네 가지 훈련방식이 모여 기능을 발휘할 때 과잉대응,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치 네다리로 버티고 있는 밥상위의 음식을 담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위와 같은 네 가지 훈련방식이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체포 과정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며 밥상의 원래 목적인 원활한 식사를 하기 위한 자체가 어려워지듯이 해당 기관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에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김영주, 2012)

이러한 중요한 요소를 네 다리 위에 있는 밥상에 비유하여 상다리(Table legs)요소이라고 명칭 해 보았다.

결국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많은 현장 경험이 있는 경찰과 2인 이상의 출동 규정에 부합하는 현장훈련으로 전문적인 경험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명목과 정당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출동 시 대응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원론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반적인 교육훈련의 이수 과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경찰의 교육 훈련은 현장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하고 2인 이상의 현장 출동 원칙에 따라 팀워크 방식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적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서 협력 방식과 그에 따른 업무의 명확한 분담 적격 여부, 법 규정 등이다. 체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본

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인 이상의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법·인권적인 지식을 함양한 현실적이고 현장 출동에 따른 대응 능력 업무 분업화, 그에 따른 숙련된 위해성 장비 사용법, 범인 체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 서로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교육은 신입교육과 실무에서 직장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장 교육은 여건상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국 신입교육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체포 방식의 훈련과 현실에 가까운 현장 대응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방법이고 현실성에 맞춰 정상화 하는 한편 직장교육은 신입 교육과정까지 익힌 능력을 유지하고 경험의 상승을 목표로 삼는 것이며, 이는 경찰관 스스로 규정에 맞는 현장 대응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시스템적인 분업화된 제압 방법을 통해 인권침해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당당히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식의 개발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2인 이상의 현장 출동 매뉴얼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훈련의 현실은 1대 1식의 상황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문헌과 논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증과 조사에 국한된 한계로 인해 아직 '2인 이상의 현장 상황에 대한 교육 효과와 실효성 검증이 부족하여 모든 현장 상황을 대변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2인 이상의 교육 훈련과 개발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경찰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영주 (2012). 수사기관의 체포관련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3
- 김주한 (2014). 신입 경찰교육훈련의 효과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p. 37.
- 박현호 (2017).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7, 12-17
- 배상흠 (2015). 경찰 교육훈련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호신 체포술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43-63
- 배철수 (2014). 한국 신입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8
- 신현기 (2016). 경찰인사관리론(제5판). 파주: 법문사, 200, 145-146, 336-337, 433-436
- 이 훈 (2015).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안연구”, 정책연구 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174
- 조계표 · 김영주 (2015). 경찰윤리의실태분석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5호.
- 최준신 (2014). 한국 경찰무도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한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84
- 한겨레. 2016. 05. 15 기사 “<기사>경찰청” 외근경찰에 권총, 테이저건 모두 지급 검토. 경찰대학, 학년별 무도교육 현황, 375-376
- 경찰청, 현장 매뉴얼, 2015. 143
-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 네이버 지식백과, 권총 및 경찰장구 사용에 관한 매뉴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
- 법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 Tickner (1950). F. J. Modern Staff Training.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50.
- Patten (1970). J r, Thomas H. Precepts for Personnel Development. Public Personnel Review 31, 1970

【Abstract】

Educational research on the dispatch system of two or more patrol officers

Kim, Young-Joo · Cho, Kye-Pyo

Currently, patrol officers dispatched are required to work in pairs, and are assigned individual duties. However, despite these rules, there are still inappropriate combat education centered around dangerous weapons and arresting technique training being taught in the police system. The human rights problems resulting from excessive responses, the damages done to the patrol officers due to insufficient responses, and the judicial issues that many officers who have justly arrested face, reveal the ultimate problem of the decrease in reliability of the police.

Considering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for change in the current training system. Specifically, in the current dispatch rule, assignment of individual duties, and training methods, realistic improvements must be made.

Having understood the arrest technique training problem and reviewed case studies of the police training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 plan to analyze the effects of implementing a realistic and professional training system, and propose a systemic solu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By effectively discussing the various issues of the proposed training and police education, I intend to propose a realistic teamwork training for paired patrol officers, enabling them to work well together in practice and theory, hence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in crime situation.

Keywords: dispatch rule of pairs, assignment of individual duties, human rights, drop in police reliability, improvement of education program